

#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

## 방문 및 온라인 상담

### 이용안내

#### 센터기능

-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·가맹계약서 내용검토 및 주의사항 안내
- 가맹·대리점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상담
  - 정보공개서 미제공, 허위·과장 정보제공,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
  - 일방적인 계약해지,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, 리뉴얼공사 강요 등
- 내용증명서, 분쟁조정신청서 등 법률서류 작성 지원

#### 지원대상

- 가맹희망자, 가맹·대리점 등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

#### 방문상담

- 방문전 ☎ 02-2133-5403(직통) 또는 국번없이 120로 사전예약 필수
  - 운영시간 : 매주 금요일 09:00 ~ 18:00(총 6회, 각 80분)
  - 위치 :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, 3층(무교동,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)
  - 교통편 : (지하철) '시청역' 1호선 4번 출구  
(버스) '서울신문사' 정류장 하차



온라인 상담은 [▶ 눈물그만](#) 검색(economy.seoul.go.kr/tearstop)

# 가맹계약

**체결 전에  
꼭 상담 받으세요**



☎ (02)2133-5403 또는 국번없이 120

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시는  
예비사장님 여러분!

**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**가 돕습니다.

# 가맹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

- 필수구입물품**(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물품)의 품목 내역 및 공급 가격, 그리고 원가율 확인하기!  
※ 개정 가맹사업법은 필수구입물품의 내역과 공급가격의 상·하한선을 기재하도록 규정
- 가맹계약서에 **가맹금, 영업지역설정, 계약해지사유** 등 가맹사업법 제11조 상 **의무기재사항**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읽어보기!  
※ 가맹금 : 가입비, 입회비, 가맹비, 교육비, 계약금 등을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
-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**를 제공받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로부터 조언받기!  
→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인근가맹점 리스트도 제공하여야 합니다.  
※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: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·소재지·전화번호가 포함된 문서
- 예상매출액 산정서**(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인 중소기업 가맹본부는 제외) 확인하기!  
→ 예상매출액 구두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!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설명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 받으세요.  
※ 예상매출액 산정서 :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가 담긴 문서
- 계약해지,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**을 상세히 확인하기!  
→ 위약금 부과, 경업금지 등 해당 조항의 내용이 과도한지를 가맹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세요.

**가맹계약 체결 전**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또는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!

## 달라진 가맹사업법!

(시행일 : 2019. 1. 1.)



### 서울특별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

-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었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→ 시·도(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)에 설치 및 운영 가능
-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 혹은 여러 곳에 중복 신청한 경우, **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**



### 필수구입물품 내역과 마진 공개

- 가맹본부가 구입강제 또는 권유하는 공급품목에 대한
  - ① 본사 물류마진, ② 특수관계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(일명, '치즈 통행세' 등)
  - ③ 판매장려금 기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
-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에 유사·동일상품을
  - ④ 대리점, 온라인,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

## 가맹점주 보호규정

### 1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

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.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·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만으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### 2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강요 금지

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. 점포노후화, 위생안 전상 결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·권유한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(20%~40%)를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### 3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금지

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,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.

### 4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통보 의무

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### 5 10년 계약갱신요구권

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. 위와 같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 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만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